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대통령 제18161호(2003. 12. 18)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, 시의회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
- 나.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예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조정코자 함(조례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지방자치법, 동법시행령
- 나.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8161호)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중 “수집 연구활동에”를 “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”로 한다

제6조 중 “월 550,000원”을 “매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원”으로 한다

제8조 제2항의 【별표 2】중 “숙박료(1야당)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숙박비 (1야당)
가등급166, 나등급 120, 다등급 92, 라등급 79
가등급145, 나등급95, 다등급70, 라등급62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조례 제493호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	조례 제493호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
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①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	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①-----수집 ·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-----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제6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550,000원으로 한다.	제6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-----매월 의정자료수집 · 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원-----.
제8조(여비지급기준)①(생략)	제8조(여비지급기준)①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
현 행

【별표 2】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2항관련)

구 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야당)	준비금		
						15 일 미만	15일이 상30일 미 만	30 일 이 상
의장 부의장	1 등 정액	실비액	(생략)	<u>가등급</u> 151 <u>나등급</u> 109 <u>다등급</u> 84 <u>라등급</u> 72	(생략)	140	170	195
의원	2 등 정액		(생략)	<u>가등급</u> 132 <u>나등급</u> 86 <u>다등급</u> 64 <u>라등급</u> 56	(생략)	130	155	180

개 정 안

【별표 2】 -----(-----)

구 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야당)	준비금		
						15 일 미만	15일이 상30일 미 만	30 일 이 상
의장 부의장	---	-----	(현 행 과 같음)	<u>가등급</u> 166 <u>나등급</u> 120 <u>다등급</u> 92 <u>라등급</u> 79	(현 행 과 같음)	---	---	---
의원	---		(현 행 과 같음)	<u>가등급</u> 145 <u>나등급</u> 95 <u>다등급</u> 70 <u>라등급</u> 62	(현 행 과 같음)	---	---	---